

경기도 공고 2026-440호

## 2026년 경기도 “소재·부품·장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사업화 지원으로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2026년 경기도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2월 20일

경기도지사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1 개 요

- 사업목적 : 기술사업화 수요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도약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신청기간 : 2026. 2. 20.(금) ~ 2026. 3. 12.(목) 18시까지
- 사업기간 : 2026년 5월 ~ 11월(약 7개월)
- 지원대상 : 3년 이상(2023. 2. 20. 이전부터) 경기도 내에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제조·개발하고 있는 중소기업
- 지원규모 : 15개 사 내외
- 지원내용 : 기업당 최대 75백만원(총사업비의 70% 이내 / 기업 부담 30% 이상)
  - (제품혁신) 시제품개발, 지식재산권, 제품규격인증 등
  - (판로개척) 홍보물 제작,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

※ 단,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시제품 개발에 사용하여야 함.

## □ 지원절차

지원 단계	세 부 내 용	주 체
사업공고(2월)	. 사업공고 (도청 홈페이지 및 경기기업비서)	경기도 / GBSA
사업접수 / 서류검토(3월)	. 접수(별도 온라인사이트) - 경기도 R&D 과제관리시스템 가입 후 제출 ( <a href="http://pms.gbsa.or.kr">http://pms.gbsa.or.kr</a> ) . 서류 적격성, 지원 자격의 적합성 등 검토	신청기업 / GBSA
서류평가(3월 말)	. 서류평가: 재무상태, 경쟁력, 일자리기여도 등	GBSA
발표평가(4월)	. 전문가 평가를 통한 우수과제 선정평가 .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등 종합적 심사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평가위원회
법위반기업 조회(4월)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등 관련 법위반사항 조회	경기도
원가분석(필요시)	. 사제품 개발 등 해당 시 원가분석(필요시. 생략 가능)	외부 전문기관
과제선정(4월 말)	. 평가를 모두 통과한 기업에 대해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기업 및 후보기 업 확정	경기도 / GBSA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5월 초)	. 원가분석 결과 반영된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서류 : 공문, 수정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선정기업
협약체결(5월)	. 선정기업(후보기업) 오리엔테이션 . 최종 과제 승인 및 협약 완료	GBSA
사업비(선금) 지급(5월 말)	. 협약에 따라 도 지원금 지급 (선정기업은 이행보증보험 발급 및 제출 필수)	GBSA
진도 점검(8월)	. 추진현황 중간점검(서면 또는 현장방문)	GBSA 및 평가위원
사업완료(11월) 및 최종점검.평가(12월 내)	. 사업완료에 따른 최종보고서 제출 및 수정제출 . 과제 추진실적 및 현장점검(최종평가)	선정기업 / GBSA 및 평가위원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27. 2.)	. 위탁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정산 및 잔액 반납 . 사업 완료한 선도기업 지정서 수여	GBSA
지정서 수여('27. 2.) 및 사후관리('27. 2.~)	. 성과관리	선정기업 / GBSA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 신청 대상

□ 신청 자격 : 아래의 ‘필수조건’ 모두와 ‘선택조건’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유형	자격조건
필수조건 (①~⑤ 모두 충족)	①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운영 ②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서) 또는 소재·부품·장비 부문 제조 매출 50% 이상 충족하는 기업(확인서 없는 기업) ③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④ 제조업 업종 영위 기업(사업자등록증명 내 제조업 명시 필수) 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개발부서 설치·운영
and	
선택조건 (①~③ 중 1개 이상 충족)	①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관리시스템 연구인력 현황 출력) ② 직전 연도(2024년) 총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 2% 이상 ③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 5천만원 이상
지원 제외	① 경기도 소부장 기업육성 지원사업, 대중소기업 기술교류 지원사업, 그린뉴딜 선도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선정기업('21년 ~ '25년) ② '26년 스타기업 육성사업,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 선정기업 ③ 중앙정부 사업에 선정된 기업(월드클래스300/플러스, 소부장 강소기업 100, 소부장 으뜸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동일한 사항으로 참여(과제 진행) 중인 기업

- 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아래에 해당될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 자본잠식 및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선정 후 과제 추진 중 경기도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2024년도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2024년도 기준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 등에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21년~'25년) 경기도 소부장 기업육성 지원사업, 대중소기업 기술교류 지원사업, 그린뉴딜 선도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 '26년 ①스타기업 육성사업, ②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중앙정부 사업에 선정된 기업(월드클래스300/플러스, 소부장 강소기업 100, 소부장 으뜸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동일한 사항으로 참여(과제 진행) 중인 기업
  - 그 외 GBSA 사업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지원 제외·취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후보)기업으로 선정된 후에도 지원 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 제외 및 해약.

### 3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15개 사 내외(기업당 최대 75백만원)
-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시제품 개발” 항목에 편성·사용하는 것이 필수임.
- 협약기간 내 완료할 수 있는 과제에 한하여 사업신청

구 분	지원 항목	세부 내용
제품 혁신	시제품 개발	개발기술 제품화, 샘플제작, 금형제작, 지그, 목업 등 제작
	SW Licence	SW설계 맞춤형지원(EDA Tool), 설계자산(IP), 디자인하우스, CAD 등
	지식재산권	국내·외 특허 출원,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획득
	제품규격인증	국내·외 제품규격 인증획득, 시험·분석, 컨설팅
	정부사업 참여 컨설팅	기업진단, 기업수요 맞춤 사업 도출, 컨설팅(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기타 사업화 지원	시장정보분석(특허·시장동향), 자율과제(제품개선 관련 활동, 기타 컨설팅 등)
판로 개척	홍보 강화	홍보물, 홍보동영상 제작, 온·오프라인 광고
	국내외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회 참가, 기업홍보 및 투자유치, 신기술·신상품 동향파악, GMS,(해외마케팅 대행), 바이어 발굴 등

- 지원 기간 : 협약체결일 ~ '26. 11. 30.까지
- 기업 부담금 : 총사업비의 30%(현금) 이상 부담

#### [참고] 사업비 계상 예시

구 분	도지원금	기업부담금	총 사업비
사업비	75,000,000원 이내	32,150,000원 이상	107,150,000원
계산식	도지원금 ≤ (총 사업비 × 0.7)	현금 ≥ (총사업비 × 0.3)	-

※ 기업부담금은 만원 단위에서 올림(예시. 32,142,857원 ⇒ 32,150,000원 작성)

##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6. 2. 20.(금) ~ 3. 12.(목) 18:00까지
- 신청 방법(온라인 / 기타 방식 불가)
  - 경기도 R&D 과제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 가입 후 전산 제출
    - 과제 책임자 및 사업 담당자 회원가입(2인 필수)
    - 접수 시, 신청기관의 과제 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
    - 과제관리 ⇒ 접수관리 ⇒ 신청서 ⇒ 등록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파일 압축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 신청 서류는 반드시 신청기관 직인 또는 서명하여 스캔본 업로드
  - 유의 사항
    - 마감 직전에는 과다 접속으로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 요망[온라인 신청 중 접수 마감 종료시간에 따른 차단 등으로 인해 최종 접수 미완료의 경우 신청자(신청기업) 책임임]
    - 온라인 제출 방식만 인정(이메일, 우편 방식 등 불가)
    - 접수 마감일('26. 3. 12. 18시) 이후 접수 불가
    - 서류 대리 작성.신청은 불가하며, 신청기업이 지원 요건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외부 업체의 추천 등으로 사업을 접수했을 경우 정보 오기입, 서류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신청기업)의 책임
    - 제출된 계획서 및 서류, 전산에 등록된 내용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5 제 출 서 류

### □ 안내 사항

- 발급 일자는 공고 시작일('26. 2. 20.) 이후 최신본으로 제출
- 파일별 연속 번호 붙여서 제출 요망  
☞ (예시) 01\_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특히 필수서류는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 빈칸 없이 모두 작성하고, 날짜·직인·서명 등 누락 시 불인정 될 수 있음

구 분	제출서류	내 용
필수	1.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붙임1]	- (과제명) 과제 핵심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 (성과목표) 본 과제로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수치로 제시, 미달성 시 패널티 부여 - (차별성 비교 제시) 유사 과제를 수행한 경우 비교표를 통해 차별점 제시
	2. 사업자등록증명(원)	- 정부24(www.gov.kr) * 사업자등록증 불인정. ** 발급일자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만 인정
	3. 공장등록증명서	- 정부24(www.gov.kr), ※ 공장만 경기도 소재인 경우 제출(본사 타 지역 소재)
	4.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부24(www.gov.kr) ※ 발급일자(유효기간 내) 공고일 기준 발급본만 인정
	5. 국세 납세증명서	- 정부24(www.gov.kr) ※ 발급일자(유효기간 내) 공고일 기준 발급본만 인정
	6. 법인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법인사업자 필수 제출
	7.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www.hometax.go.kr) - 3년분 제출('22~'24년)
	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국세청(www.hometax.go.kr) - 2024년도분 / 2025년도분 각 2년분 제출 ※ 매월 신고 12월 또는 반기 신고 반기월 귀속연월 분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9.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제출

구 분	제출서류	내 용	
	10.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b>[붙임2]</b>		
	11.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 확인서 등 <b>[붙임3]</b>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부품.장비 <b>전문기업 확인서 만 제출</b></li> <li>☞ 한국 산업 기술 진흥 협회 (www.sobujang.net)</li> </ul>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부품.장비 <b>매출액 검토 확인서 제출</b></li> <li>-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필수</li> </ul>
	12.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b>[붙임4]</b>		
	13. 기업의 범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약약서 <b>[붙임5]</b>		
선택	14.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b>[붙임6]</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평가(기업 경쟁력) 점수 항목</li> <li>.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연구개발) 투자정도</li> </ul>	
	15. 지식재산권 (국내특허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평가(기업 경쟁력) 점수 항목</li> <li>. 국내특허등록(증 또는 원부) ※ 특허출원(서) 미인정</li> </ul>	
	16. 경기도 소부장 핵심 전략품목 생산확인서 <b>[붙임7]</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평가 가점 항목</li> <li>. 경기도 소부장 핵심전략품목(30개) 생산기업</li> </ul>	
	17. 대·중견기업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및 계획서 <b>[붙임8]</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평가 가점 항목</li> </ul>	
	18. 경기도 인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평가 가점 항목</li> <li>① 경기도 유망중소기업</li> <li>② 경기도 착한기업</li> <li>③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li> <li>④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li> <li>⑤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li> <li>⑥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li> <li>⑦ 4.5일제 도입기업</li> <li>⑧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li> <li>⑨ 경기도 임팩트 유니콘기업</li> </ul>	
19. 환경 분야 인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평가 가점 항목</li> <li>. 신기술(NET), 신제품(NEP), 녹색인증, 녹색기업, 환경기술성능확인 등 환경분야 관련 인증(서)</li> </ul>		

## 6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 절차: ① 적격 심사 → ② 서류 평가 → ③ 발표 평가

□ 평가 기준

### ① 적격 심사

- 서류 검토: 신청 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제재 사항 등
- 기술개발 인프라, 사업화 능력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검증

### ② 서류 평가

- 재무상태(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 경쟁력, 일자리기여도 등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서류 평가 (100점)	성장성(30점)	매출액 규모 / 매출액 증가액 /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20점)	매출액 영업이익률
	안정성(15점)	부채비율
	경쟁력(20점)	기술개발 투자율 / 지식재산권 보유 정도(건수)
	일자리기여도(15점)	고용증가율
가점(5점)	가점(5)	경기도 인증, 환경 관련 제품·기술 인증 등 ※ 건당 1점 / 최대 5점

※ 최근 3개년도(2022년~2024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

- 서류평가(100점) + 가점(5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규모의 2배수 이내(약 30개 사)로 발표평가 대상 선정

[참고]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① 가산점은 건당 1점, 최대 5점으로 적용함
- ② 인증서, 지정서, 확인서 등은 유효기간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경과하지 않은 경우만 인정

### ③ 발표 평가

- 서류평가 결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및 사업성·파급효과 등을 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기업 수와 기업별 지원 예산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유의 사항 : 「경기도 범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라 법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평가 총점의 20% 감점

- (대상)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 노동, 환경, 납세 관련 11개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제한) 평가 총점의 20% 감점

- 단, 법 위반 사실이 감점 유예대상 47개 범위반행위(불임)에 해당되는 경우, 「범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 제출 시 감점 미적용

## 7 기 타 사 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업, 대표, 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 목표 등에 대한 공시

- 이행보증보험 가입

- 최종 선정된 기업은 道 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 추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가입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가입기간 별도 안내)

- 발급 수수료는 사업비로 인정

- 범부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연계
  - 사업비는 범부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를 통하여 가상계좌로 교부되며 선정기업은 RCMS 연계 가능한 참여은행의 계좌 및 필요시 법인카드(사업비 전용카드) 사용(필수)
  
- 부당 지원 수혜자 제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향후 道 지원사업 배제, 민형사상의 조치 등이 실시될 수 있음

## 8 문 의 처

문 의 처	연 락 처	이 메 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지원팀 정기호 대리	031-259-6493	sbj@gbsa.or.kr

※ 통화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경우 e-mail로 문의 바랍니다.

## 붙임

## 감점 유예 대상 47개 법 위반 행위 목록

구분	법령	법위반 행위
1	공정거래법	• 지주회사 설립 불성실신고
2	공정거래법	•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 불성실신고
3	표시광고법	• 공정위 조사에 불출석
4	근로기준법	• 노동위, 근로감독관에 대한 불성실 보고
5	근로기준법	• 법령 등 주요 내용 게시 의무 위반 (취업규칙 등에 관한 열람보장 위반)
6	근로기준법	• 사용증명서 발급 위반 (미발급)
7	근로기준법	• 근로자명부 작성 위반 (미작성)
8	근로기준법	• 계약서류 보존 의무 위반 (계약서류 미보존)
9	근로기준법	•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의무 위반 (대장, 명세서 미작성)
10	근로기준법	• 연소자 증명서 비치 위반(미비치)
11	근로기준법	•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취업관련 규칙의 신고 미이행)
12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지도사 등록, 등록갱신 미이행
13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지도사의 보증보험 미가입 등 필요조치 미이행
14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지도사의 직무 수행 중 작성한 서류 등에의 기명 날인 서명 미이행
15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 사실의 불성실 보고
16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 대표 참여 의무 위반 (근로자대표 참여 배제)
17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 발생 불성실 보고
18	산업안전보건법	• 위생시설 설치장소 미제공 및 시설 이용 비협조
19	산업안전보건법	• 휴게시설 미설치
20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불이행
21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위반
22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위반 (책임자 미지정)
23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위반 (미작성)
24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구분	법령	법위반 행위
25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 대표의 참석의무 미이행
26	산업안전보건법	• 불성실 보고
27	폐기물관리법	• 전용용기제조업 등록 불성실 신고
28	폐기물관리법	• 불성실 신고 보고를 통해 적합성 확인 구득
29	폐기물관리법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에 관한 불성실 신고
30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의 인계·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불성실 입력
31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불성실 신고
32	폐기물관리법	•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입력
33	폐기물관리법	• 유해성 정보자료의 불성실 작성
34	폐기물관리법	•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미제공
35	소음진동관리법	•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의 불성실 신고
36	소음진동관리법	• 변경신고의 불성실 신고
37	소음진동관리법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의 불성실 신고
38	소음진동관리법	• 소음허용기준 위반 운영자의 개선사항 불성실 보고
39	소음진동관리법	•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실시
40	물환경보전법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시작 불성실 신고
41	물환경보전법	•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의 불성실 신고
42	물환경보전법	• 비점오염원 설치의 불성실 신고
43	물환경보전법	•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의 불성실 관리
44	물환경보전법	• 공유수역 관리 규정의 미이행
45	물환경보전법	•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의 불성실 입력
46	물환경보전법	•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시행
47	지방세기본법	•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의 성실신고 방해 행위